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0
----------	--------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부칙을 변경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u>2022년 8월 19일</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u>2023년 1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8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을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으로,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을 “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3가)”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0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제5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이하 이 절에서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신대방동 722)에 둔다.

제51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제50조부터 제130조까지를 제53조부터 제133조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종로소방서의 위치란 중 “종로1길 28(수송동)”을 “율곡로 78(운니동)”으로 하고, 금천소방서의 위치란 중 “독산동 1054-8번지”를 “시흥대로 342(독산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절 <u>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u></p> <p>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u>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u>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둔다</u></p> <p>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제3장 직속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8절 <u>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u></p> <p>제44조(설치) ① ----- <u>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u> -----<u>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 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② -----<u>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3가)-----</u></p> <p>제46조(소관사무) ----- -----</p> <p>1. <u>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제3장 직속기관</p> <p>제10절 <u>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u></p> <p>제5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u>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② 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신대방동 722)에 둔다.																								
< 신 설 >	제51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신 설 >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신 설 >	1.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제50조 ~ 제130조(생략)	제53조 ~ 제133조 (현행 제50조부터 제130조까지와 같음)																								
[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7조제2항 관련)	[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7조제2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칭</th> <th style="width: 45%;">위치</th> <th style="width: 40%;">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종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td> <td>종로구 일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금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td> <td>금천구 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구 일원	(생략)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	금천구 일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칭</th> <th style="width: 45%;">위치</th> <th style="width: 40%;">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종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td> <td>종로구 일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금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td> <td>금천구 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	종로구 일원	(현행과 같음)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	금천구 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구 일원																							
(생략)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	금천구 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	종로구 일원																							
(현행과 같음)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	금천구 일원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